## 완도군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나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진위여부를 조회하며, 확인 결과 입력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 **완도군내**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단,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은 접수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 신청자격에 따른 청약일정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6.공급일정(7p)"을 확인하신후 해당 일자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1.01(금)이며, 이는 신청자격(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동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App명 LH청약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동일한 유형의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시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삭제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명부에서 삭제됩니다.

#### 1. 건설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320호

#### 2. 임대대상

	세대 당 계약면적(m²)									
공급 형별	주거	주거	그밖에 :	공용면적		건설 호수	모집 호수	해당동	구조 및	입주
(m²)	전용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호)	(호)	31100	난방	예정
26A	26.91	14.8113	3.5320	3.8703	49.1236	122	50	102,103	철근 콘크리트,	'20.05
26B (주거약자)	26.91	14.8113	3.5320	3.8703	49.1236	24	14	102,103	개별난방, 평지붕	20.05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여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는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 및 예비자를 모집하며, 모집호수는 추후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또는 계약해지 대상이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u>이 주택의 입주는 임대보증금(계약금 및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개별 입주일은</u>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임대조건

공급		기본 임대	조건(원)			전환 임대조건	선(원) [예시]	
형별		의이대구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m²)	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6	E 900 000	1 160 000	4 640 000	99,000	(+)	7,000,000	12,800,000	64,000
20	5,800,000	1,160,000	1,160,000   4,640,000		(-)	2,000,000	3,800,000	104,00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자격 검증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mark>양권등 포함</mark>)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④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별표1)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46m'형까지 신청가능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고업제후유의증 등 환자자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업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勢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주거약자는 <u>주거약자용 주택(26B형)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26A형) 신청으로 전환하여</u> <u>각 순위별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u> 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781,270원이하			
		4인가구	4,315,641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	5인가구	4,689,906원이하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6인가구	5,144,224원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b>세전금액</b> 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7인가구	5,598,542원이하			
		8인가구	6,052,860원이하			
총자산가액 • 세대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	있는 모든 <b>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b>		
시간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 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li>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총 자 산	자동차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금융 자산	<ul> <li>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li> <li>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li>「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li> </ul>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ᄓᇜ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sup>\*</sup>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 부적격 소명

- 주택소유여부,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접수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5. 공급일정

#### ■ 공급일정

	인터	넷청약자	-1-1-1-1-1-	계약체결	
신청접수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인터넷(PC, 모바일) 접수>         '19. 11. 18(월) 10:00 ~         11. 29(금) 18:00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접수>         '19. 11. 22(금)         10:00 ~ 16:00         (단, 12:00~13:00 제외)	<b>'19. 12. 05(목)</b> 11:00 이후	<b>'19. 12. 10(화) ~</b> <b>12. 11(수)</b> 매일 10:00 ~ 16:00 (단, 12:00~13:00 제외)	<b>'20. 02. 21(금)</b> 16:00 이후	<온라인 계약>         '20. 03. 04(수) ~         03. 06(금)         매일 10:00~16:00         <현장계약>         '20. 03. 06(금)         10:00~16:00         (단, 12:00~13:00 제외)	

- ※ 우선공급 신청 접수일에는 우선공급대상자만 신청 가능하고,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 신청접수: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현장접수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현장접수, 서류제출, 현장계약 장소 : 완도읍 군민회관 1층(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 완도군민회관)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 당첨자 여부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로 당첨자 발표일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됩니다.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LH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6.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필요서류(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접수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③ 인터넷신청



####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자격별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신청마감일 오후 6시까지(현장접수는 해당일 오후 4시까지) 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순위 확인과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우리공사에서 청약자 순위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접수시 '청약순위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완도군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관리번호 : 2019000982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b>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b>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 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 모바일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7. 입주자선정

#### ※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 <b>순위</b> → <b>이상년</b> 자녀 <b>월평균 소득 50%이하 이상</b> 인자	_ →	배점합산	$\rightarrow$	추첨
--	-----	------	---------------	----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700,907원 이하	3,781,270원 이하
4인	3,082,601원 이하	4,315,641원 이하
5인	3,349,933원 이하	4,689,906원 이하
6인	3,674,446원 이하	5,144,224원 이하
7인	3,998,959원 이하	5,598,542원 이하
8인	4,323,472원 이하	6,052,860원 이하

#### 2. 순위

①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도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	비고	
일반공급 대상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b>월평균</b> 소 <b>득 50%이하</b>	<b>미성년자녀</b> <b>순위 → 3명 → 배점</b> 합산 <b>이상</b> 인자	배점도 동일할 경우 <b>추첨</b> 으로 결정
주거약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b>월평균</b> 소 <b>득 50%이하</b>	<b>순위</b>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b>배점</b> 합산	<b>구엽</b> 스도 결정

####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1969.11.01 이전 출생)	만 40세 이상 (1979.11.01 이전 출생)	만 30세 이상 (1989.11.01 이전 출생)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완도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 [만19세미만(2000.11.02 이후 출생),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앙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⑤,⑥,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단, 「민법」상 미성년자(2000.11.02 이후 출생)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1959.11.01 이전 출생)에 한함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완도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④ 사회취약계층(3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① 부양가족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 탈락으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배점기준표"
  가 적용됩니다.(단, 별도 전환 신청한 경우에 한함)

#### 8.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9.11.0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ul>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완도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완도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li> <li>·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기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6m²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1통

##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건강보험자격득실획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
		중소기업획인서	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ul> <li>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li> <li>*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li> </ul>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b>생계·의료급여 수급자</b>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동일순위 경쟁시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배점서류 ( 입 주 자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선정참조)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b>북한이탈주민</b>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사. <b>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b> 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시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주민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b>아동복지시설 퇴소자</b>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ul><li>화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li><li>그 가구원 포함)</li></ul>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 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통장 1면 사본	-

####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2020.02.21(금) 16:00 이후]

- 주택의 동 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충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함
-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될 수 있음.

#### ■ 계약안내

- 온라인 계약 [계약기간 : 2020.03.04(수) ~ 03.06(금) 매일 10:00 ~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청약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절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하셨더라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출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반드시 프린터 테스트 후 출력하여야 하며, 계약서 인쇄버튼 클릭 후 개인 프린터상태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도 1회 출력으로 간주합니다.

####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현장계약일[2020.03.06(금) 10:00 ~ 16:00]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li>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li> <li>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li> <li>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li>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li> </ul>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 계약체결장소 : 당첨자 대상 추후 별도 안내 예정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li> <li>*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li> </ul>			
임대대상 및 조건	소득기준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호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100% 110%	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10% 120%	
	30%초과 30%이하 30%초과 50%이하	120%	140%	
	30%4511 30%0 04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u>할증비율</u>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사망, 이혼, 혼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ul> <li>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li> <li>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입주자 선 정	<ul>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li> </ul>			
신청서류	<ul> <li>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 당첨자 결정 및

##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는 왕복 2차로이고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로 인한 피해 또는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구여건

#### 지구 및 단지 특성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외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시설물은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주변에 완도해양경찰서, 완도군청, 완도군립도서관, 완도초등학교, 완도중학교, 광주지방법원 완도군지원,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 다도 해일출공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는 완도타워 및 다도해일출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완도군청, 완도군립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완도해양경찰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광주지방법원완도군지원, 완도초등학교, 완도성당,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 KT완도지사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서측 1개소이며 단지 출입도로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부 단차 발생구간은 비탈면, 옹벽 또는 석축 등으로 마감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보도, 가로등, 전주, 출입구, 울타리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블록별 단지 내부여건(공통)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2차원, 3차원),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외 시설물) 인접도로, 공원, 보도, 전주, 가로등 등
  - (단지내 시설물) 지하주차장, 재활용품보관소, 데크주차장,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휀룸, 제연휀룸, 관리사무소, 주민상담실, 회의실, MDF실, 방재실, 휴게소, 사회적기업공간,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우체통, 자전거보관소, 공청안테나, LPG저장탱크, 지하주차장용 엘리베이터, 통합경비실, 전기차 충전시설
- 단지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측세대, 저층세대 등)는 사다리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공용면적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시공사 부도 등)로 인하여 공사 준공 및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03동 옥탑에 공청안테나, 위성수신안테나가 설치되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제연설비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CI(LH)등의 로고표시 및 완도군 색채가 반영될 수 있으며 아파트 명칭은 고유의 우리말 또는 지명이 사용될 예정으로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사회적기업공간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용도, 구조,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291대(지상 221대, 지하 68대, 근린생활시설 2대)이며, 단지배치 상 동별로 주차대수 가 일정하지 않으니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 내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휀룸, 제연휀룸, 옥외계단실 환기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소음, 진동, 미관저해 악취, 해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2대)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며, 단지외에는 주정차를 할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북측과 104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여 단지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방범용cctv는 지하주차장,승강기내부,단지출입구,어린이놀이터,지하층및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원격검침은 2종(전기,수도)임

####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시어 이사 및 구매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해 샘플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 세대 간 벽체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 세탁기 설치위치 상부에는 창고선반이 설치됩니다.
-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뒷면 및 하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마감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일반사항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 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점의 **공사진척도 및 현장여건, 공급일정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편의시설 중 일부를 무료로 설치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단, 청약 및 계약체결시 별도 신청 필요)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71.41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н сі	좌식 싱크대 설치		
부엌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욕실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장애인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sup>\*</sup>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되는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설치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욕실 출입구의 폭을 80㎝이상이 되도록 확대적용이 기능한 지구에 한함 · 개폐방향 변경 (안여닫이→밖여닫이)		
욕실 /1 개 시 에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의자 및 안전손잡이 설치(디자형 1개, —지형 1개)		
(1개소에 한함)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수압을 이용, 핸들 조작만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세면기		
~	좌식 씽크대	의자 사용이 가능한 씽크대(물버림대)를 설치		
주방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2m)		
거실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야간센서등	욕실 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자가 거주하는 주동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고통	욕실 미끄럼방지 타일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 (마찰계수 기준 이상의 제품을 적용)		
	주동·통로 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동현관입구의 램프난간, 계단난간, 내부 경사로 난간에 점자스티커 부착	- 공통적용	

<sup>\*</sup>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u>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u>를 말합니다.

<sup>\*</sup>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

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로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소득	사업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 -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기선·범선·전미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기바세정 다리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	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자산 기타산 송 합	일반 지상	발한 자산 변화 등 전 등 전 등 지는 자신 등 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회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동 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트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분자동차 기본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항공기 건부 1사반 비전에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구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株本), 죽목 등 입목(효木)재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공토회원권, 요토회원권 중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토회원권 구원에 이와 연업에 대한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물자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 • 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5.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BL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STX건설㈜ 신안건설㈜	-	㈜건원엔지니어링 ㈜티에스엔지니어링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b>1661-7700</b>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됩니다.)		
인 터 넷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접수처	완도읍 군민회관 1층[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 완도군민회관(가용리 50-85)]		

2019. 10. 31



# 광주전남지역본부